

##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규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7조의3(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) ① (생략)</p> <p>② 「관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4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여야 하는 물품은 <u>별표 11과 같다.</u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7조의3(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12와</u>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[별표8] 신규추가에 따른 기존 별표 번호 정정</p>
<p>제16조(검사대상 선별) ① 수출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<u>수출통관시스템에 제출된 수출신고자료에 의해 선별되거나 제10조에 따른 신고서 처리 방법 결정시 수출업무담당과장이 선별한다.</u></p> <p>② <u>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대상물품의 선별은 「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	<p>제16조(검사대상 선별) ① ----- ----- <u>수출신고 자료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, 제10조에 따른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이</u>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	<p>○ 같은 조 제2항, 제3항의 「수출물품 선별 검사에 관한 훈령」 준용 규정 삭제에 따른 문구 수정</p> <p>○ 「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」 준용 규정 삭제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「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1.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 및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“<u>환특법</u>”이라 한다.) 위반사실이 없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전분기 수출실적 상위 10% 해당업체로서 최근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실적이 없고 법 및 <u>환특법</u>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</p> <p>4. ~ 5. (생략)</p>	<p>② 제1항에도 ----- ----- ----- <u>검사대상으로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.</u></p> <p>1. ----- ----- ----- (이하 “<u>관세환급특례법</u>”이라 한다.)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관세환급특례법 -----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「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」 준용 규정 삭제 및 문구 수정</p> <p>○ 법제처 공식 약칭 사용</p> <p>○ 법제처 공식 약칭 사용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2조(수출신고필증의 교부) ①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<u>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(재정경제부 훈령)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</u>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세관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4의 적재지검사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<u>별표 9의 안내문을</u>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출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시점에서의 안내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	<p>제22조(수출신고필증의 교부) ① ----- ----- <u>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<u>별표 10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「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」 폐지('05.08.18., 기재부) 사항 반영</p> <p>○ [별표8] 신규추가에 따른 기존 별표 번호 정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6조(신고사항의 정정)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<u>별표 8</u>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(전자이미지 전송 포함)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출신고건은 <u>별표 10</u>의 자율정정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출항전까지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. 다만,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별표 10</u>의 항목에 대해서도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.</p>	<p>제26조(신고사항의 정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9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별표 11</u>의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11</u>의 ----- -----.</p>	<p>○ [별표8] 신규추가에 따른 기존 별표 번호 정정</p> <p>○ [별표8] 신규추가에 따른 기존 별표 번호 정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③ (생략)</p> <p>제27조(신고의 취하)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<u>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(신청)서</u>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고, 증빙서류를 제출(전자이미지 전송을 포함한다)해야 한다. 다만, 제3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취하신청(승인)서를 접수한 세관장은</u> <u>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</u> 수출신고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7조(신고의 취하) ① ----- ----- - <u>별지 제2호의2서식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<u>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「관세법」 제250조(신고의 취하 및 각하) 제4항 개정('20.12.22.신설)사항 반영을 위한 수출신고취하 승인(신청)서 분리·신설</p> <p>○ 「관세법」 제250조(신고의 취하 및 각하) 제4항 개정('20.12.22.신설)사항 반영</p> <p>※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(제18조, 기 반영 : 10일)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32조(선상수출신고) ①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32조(선상수출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국내 제조 HS 제72류 철강류(웨이스트, 스크랩 등 HS 제7204호 물품 제외)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물류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제조 철강류의 선상수출신고 허용</p> <p>※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 적용 세번(HS 7204호) 물품 제외</p>
<p>제35조의2(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<u>별표 12</u>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35조의2(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별표 13</u> ----- -----.</p>	<p>○ [별표8] 신규추가에 따른 기존 별표 번호 정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48조(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&lt; 신설 &gt;</p>	<p>제48조(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법 제143조에 따른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적재되어 설치 및 사용될 목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반출하려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. 이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적재물품과 대조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 별표 8의 고무도장을 날인 후 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 등록하거나 적재등록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○ 선박·항공기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선박·항공기에 설치 및 사용*될 목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의 적재확인 및 등록방법 신설</p> <p>* B/L 등 운송서류 미발행 → 적재화물목록 작성·제출 불가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&lt; 신설 &gt;</p>	<p>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<u>세관장이 인정하는 긴급 수리용 항공기 부분품은 수출신고 수리전에 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적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적재 허가를 받은 자는 국제무역기가 출항한 날의 다음 날까지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○ 항공기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긴급 수리용 항공기 부분품의 적재 및 수출신고 절차 신설</p>
<p>&lt; 신설 &gt;</p>	<p>⑥ 제5항에 따라 <u>수출신고한 자는 세관 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. 이때 세관공무원은 적재 물품이 이상이 없는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받아 별표 8의 고무도장을 날인 후 통관시스템에 적재 사실을 직접 등록하거나 적재 등록 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○ 항공기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신고 수리된 세관장이 인정하는 긴급 수리용 항공기 부분품의 적재 확인 및 등록방법 신설</p>

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54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<u>2023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54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<u>고시에</u> ----- <u>2024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○ 재검토기한 재설정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부 칙</u>(관세청 고시 제2024-00호, 2024. 00.00) 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고시는 202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<u>제2조(경과조치)</u>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/p>	

현행	개정안	비고
<p>&lt; 신설 &gt;</p>	<p>[별표 8]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 적재확인인 (제48조제4항 및 제6항 관련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10px auto;"> <p>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수출물품 적재확인필 ○○세관장 ○○과 담당자(인) 확인일자 : _____</p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cm      2.5cm</p>	<p>○ 제48조 제4항 및 제6항 신설에 따른 적재확인 표시[별표 8] 신규 제작</p>
<p>[별표 8]  (생략)</p>	<p>[별표 9] 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기존 [별표 8]을 [별표 9]로 변경</p>
<p>[별표 9]  (생략)</p>	<p>[별표 10] 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기존 [별표 9]을 [별표 10]로 변경</p>
<p>[별표 10]  (생략)</p>	<p>[별표 11] 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기존 [별표 10]을 [별표 11]로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1]</p> <p>(생략)</p>	<p>[별표 12]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기존 [별표 11]을 [별표 12]로 변경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2]</p> <p>(생략)</p>	<p>[별표 13]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기존 [별표 12]을 [별표 13]로 변경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] 수출신고서 작성 요령</p> <p>(1) ~ (4) (생략)</p> <p>(5)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항목</th> <th>TYPE</th> <th>SIZE</th> <th>조건</th> <th>서류/EDI</th> <th>작성요령</th> <th>작성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~ ②</td> <td>(생략)</td> <td>(생략)</td> <td>(생략)</td> <td>(생략)</td> <td>(생략)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③결제금액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○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도조건, 통화종류, 금액(실제 결제금액) 순으로 기재(통계부호표 참조) - 인도조건은 INCOTERMS 2000코드를 기재 (INCOTERMS 2010 코드 이외에는 환산하여 기재) <u>EXW, FAS, FCA, FOB, CFR, CIF, CPT, CIP, DAT, DAP, DDP (11개)</u></td> <td>- CIF</td> </tr> <tr> <td>- 인도조건</td> <td>AN</td> <td>3</td> <td>M</td> <td>공통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- 통화종류</td> <td>AN</td> <td>3</td> <td>M</td> <td>공통</td> <td>- 통화종류는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종류용 기제(다만, 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종류가 없는 경우에는 'USD'로 기재)</td> <td>- USD</td> </tr> <tr> <td>- 결제금액</td> <td>N.</td> <td>18</td> <td>M</td> <td>공통</td> <td>- 금액은 통화종류에 따른 금액 실제 결제금액을 기재 (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코드가 없는 경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환산 기재) * 결제금액에 운임,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그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원화로 기재</td> <td>- 2,990.00</td> </tr> <tr> <td>③ ~ ④</td> <td>(생략)</td> <td>(생략)</td> <td>(생략)</td> <td>(생략)</td> <td>(생략)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항목	TYPE	SIZE	조건	서류/EDI	작성요령	작성예	① ~ ②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③결제금액					○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도조건, 통화종류, 금액(실제 결제금액) 순으로 기재(통계부호표 참조) - 인도조건은 INCOTERMS 2000코드를 기재 (INCOTERMS 2010 코드 이외에는 환산하여 기재) <u>EXW, FAS, FCA, FOB, CFR, CIF, CPT, CIP, DAT, DAP, DDP (11개)</u>	- CIF	- 인도조건	AN	3	M	공통			- 통화종류	AN	3	M	공통	- 통화종류는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종류용 기제(다만, 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종류가 없는 경우에는 'USD'로 기재)	- USD	- 결제금액	N.	18	M	공통	- 금액은 통화종류에 따른 금액 실제 결제금액을 기재 (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코드가 없는 경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환산 기재) * 결제금액에 운임,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그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원화로 기재	- 2,990.00	③ ~ ④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<p>[별표] 수출신고서 작성 요령</p> <p>(1) ~ (4) (현행과 같음)</p> <p>(5)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항목</th> <th>TYPE</th> <th>SIZE</th> <th>조건</th> <th>서류/EDI</th> <th>작성요령</th> <th>작성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~ ②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③결제금액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○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도조건, 통화종류, 금액(실제 결제금액) 순으로 기재(통계부호표 참조) - 인도조건은 INCOTERMS 2020코드를 기재 (INCOTERMS 2020 코드 이외에는 환산하여 기재) <u>EXW, FAS, FCA, FOB, CFR, CIF, CPT, CIP, DAP, DPU, DDP (11개)</u></td> <td>- CIF</td> </tr> <tr> <td>- 인도조건</td> <td>AN</td> <td>3</td> <td>M</td> <td>공통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- 통화종류</td> <td>AN</td> <td>3</td> <td>M</td> <td>공통</td> <td>- 통화종류는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종류용 기제(다만, 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종류가 없는 경우에는 'USD'로 기재)</td> <td>- USD</td> </tr> <tr> <td>- 결제금액</td> <td>N.</td> <td>18</td> <td>M</td> <td>공통</td> <td>- 금액은 통화종류에 따른 금액 실제 결제금액을 기재 (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코드가 없는 경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환산 기재) * 결제금액에 운임,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그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원화로 기재</td> <td>- 2,990.00</td> </tr> <tr> <td>③ ~ ④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항목	TYPE	SIZE	조건	서류/EDI	작성요령	작성예	① ~ ②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③결제금액					○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도조건, 통화종류, 금액(실제 결제금액) 순으로 기재(통계부호표 참조) - 인도조건은 INCOTERMS 2020코드를 기재 (INCOTERMS 2020 코드 이외에는 환산하여 기재) <u>EXW, FAS, FCA, FOB, CFR, CIF, CPT, CIP, DAP, DPU, DDP (11개)</u>	- CIF	- 인도조건	AN	3	M	공통			- 통화종류	AN	3	M	공통	- 통화종류는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종류용 기제(다만, 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종류가 없는 경우에는 'USD'로 기재)	- USD	- 결제금액	N.	18	M	공통	- 금액은 통화종류에 따른 금액 실제 결제금액을 기재 (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코드가 없는 경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환산 기재) * 결제금액에 운임,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그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원화로 기재	- 2,990.00	③ ~ ④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국제상거래조건 제8차 개정사항(Incoterms 2020) 반영</p>
항목	TYPE	SIZE	조건	서류/EDI	작성요령	작성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~ ②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결제금액					○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도조건, 통화종류, 금액(실제 결제금액) 순으로 기재(통계부호표 참조) - 인도조건은 INCOTERMS 2000코드를 기재 (INCOTERMS 2010 코드 이외에는 환산하여 기재) <u>EXW, FAS, FCA, FOB, CFR, CIF, CPT, CIP, DAT, DAP, DDP (11개)</u>	- CIF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인도조건	AN	3	M	공통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통화종류	AN	3	M	공통	- 통화종류는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종류용 기제(다만, 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종류가 없는 경우에는 'USD'로 기재)	- USD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결제금액	N.	18	M	공통	- 금액은 통화종류에 따른 금액 실제 결제금액을 기재 (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코드가 없는 경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환산 기재) * 결제금액에 운임,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그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원화로 기재	- 2,990.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~ ④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항목	TYPE	SIZE	조건	서류/EDI	작성요령	작성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~ ②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결제금액					○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도조건, 통화종류, 금액(실제 결제금액) 순으로 기재(통계부호표 참조) - 인도조건은 INCOTERMS 2020코드를 기재 (INCOTERMS 2020 코드 이외에는 환산하여 기재) <u>EXW, FAS, FCA, FOB, CFR, CIF, CPT, CIP, DAP, DPU, DDP (11개)</u>	- CIF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인도조건	AN	3	M	공통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통화종류	AN	3	M	공통	- 통화종류는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종류용 기제(다만, 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종류가 없는 경우에는 'USD'로 기재)	- USD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결제금액	N.	18	M	공통	- 금액은 통화종류에 따른 금액 실제 결제금액을 기재 (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코드가 없는 경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환산 기재) * 결제금액에 운임,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그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원화로 기재	- 2,990.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~ ④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





